

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오한아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132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03월 10일
발 의 자: 오한아 의원(1명)
찬 성 자: 김기덕, 김종무, 김평남,
김혜련, 김희걸, 박기열,
박순규, 이광성, 이영실,
홍성룡, 황규복 의원(11
명)

1. 제안이유

- 시민참여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 누구나 생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문화예술의 향유 기회 확대와 이를 장려하기 위한 노력을 시장의 책무에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생활문화예술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(안 제2조).
- 나. 시장의 시민 생활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활동 장려 노력에 대한 의무를 규정함(안 제4조).
- 다.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지원단에 단장과 직원을 두는 규정을 삭제함(안 제7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문화예술진흥법 , 지역문화진흥법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7조”를 “「지역문화진흥법」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호(중전의 제1호) 중 “「예술인 복지법」 제2조제2호”를 “「예술인 복지법」 제2조제2호”로 한다.

1. “생활문화”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·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.

제4조 중 “시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·보호 및 육성”을 “시민 누구나 생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문화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전단 중 “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에 제2항”을 “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2. ~ 3. (생략)

제4조(시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시장 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.)은 생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 하고 시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·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.

제7조(지원단 설치·운영 등) ① 시장은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에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지원단(이하 “지원단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지원단에 단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 (생략)

3. ~ 4. (현행 제2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)

제4조(시장의 책무) -----

--- 시민 누구나 생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문화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---.

제7조(지원단 설치·운영 등) ① -----
---- 제2항 -----

-----.

<후단 삭제>

② (현행과 같음)